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
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3. 11. 11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11. 6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8.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3.8.27.

다. 상정일자 :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3.9.2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18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3.10.24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18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위원회(2013.11.6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구 본 수 교육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1) 목적(안 제1조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) 기금의 조성(안 제2조)

- 기금은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금,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함

3) 기금의 용도(안 제3조)

- 기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설계비, 건축비 및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,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용도에만 사용함

4) 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4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됨

5) 위원회 기능(안 제5조)

-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

6) 의견청취 등(안 제13조)

-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

7)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15조)

-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·운용하며, 구

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여야 하고,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

8) 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16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 가능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, 그 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.

0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설계비와 건축비 등 그리고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4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.

안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안 제8조에서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

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, 안 제16조에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0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5호에 도서관 및 체육관 설치·관리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였고, 「도서관법」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,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. 따라서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, 마포의 교육혁신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기금의 설치·운동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.

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, 총 426억 8,200만원으로 발전소지원금 130억원, 주차장특별회계 70억8,600만원(시비 : 31억8천만원 44.8%, 구비 : 39억600만원 55.2%), 국시비 : 64억1,300만원(국비 : 53억3,500만원 83.2%, 시비 : 10억7,800만원 16.8%), 특별교부금 83억4,300만원 (3년)이 되겠음. 당초에는 당인리발전소 지원금 총액 282억원 중 208억4천만원을 중앙도서관 등의 건립재원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30억원으로 건립재원을 조정함에 따라 건립재원 부족분은 국·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2013년6월 “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

계획 연구”를 시행하였고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·융자심사분석 의뢰는 2013년 8월 서울시에서 “부족한 공공도서관과 교육문화 지원시설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, 청소년교육센터의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콘텐츠 확보,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보완하고, 국비 미확보시 구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”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되어 2013년 9월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 중에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